

② 대상 : 해당 자료는 본인이 증빙

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9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3조, 「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「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

③ 가산점 부여 방법 :

모든 영역별로 만점의 40%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9조제1항제1호, 제2호,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 영역별 만점의 10%씩 가산, 동법 제29조제1항제3호,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 영역별 만점의 5%씩 가산(단, 어느 한 영역이라도 40% 미만이면 가산점 대상에서 제외)

다) 성범죄경력조회,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, 결격사유조회

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조회 시간이 지연될 경우 '조건부 계약' 또는 '서약서(서식 9)'를 활용 함[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-9081(2010.08.28.)]

- 조건부 계약 내용(예시) : 제00조 사용자는 채용 후 유관기관 간 협의 결과에 따라 결격사유조회 등을 실시하고 채용 결격 사유를 통보받은 경우 그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.

라) 채용 결정 및 계약 임용

- ① 결격사유 확인 후 채용 결정 및 당사자와 직접 계약 - 계약서 양자 보관
- ② 1년 이내 단위로 계약
- ③ 계약기간, 보수, 복무, 휴가, 계약 해지 조건, 연수 의무, 평가 등의 등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 (서식 16, 17) → 임용

5) 임용기간

- 가) 1년 이내로 기간을 정해 임용함 (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, 질의응답7번 참고)
- 나) 정규교원 결원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 다만, 학기말(초)의 단기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은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조정 가능

6) 경력인정: 근무기간을 호봉승급기간 및 교육경력으로 산입. 단,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은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1일 단위(8시간 미만은 절사)로 경력 평정

7) 보수 등 처우

가) 호봉 책정

- ①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지급함.(공무원보수규정「별표 11」)